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재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1915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기간 확대(이재관의원안)	2

I. 개요

1. 이재관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1915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이재관의원 등 13인
- (2) 제 안 일 : 2025. 8. 1.
- (3) 회 부 일 : 2025. 8. 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창업지를 기준으로 5년간 50%에서 100% 사이의 비율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자본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청년들이 창업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세제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을 확대함으로써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창업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의 미래 성장을 이끌 창업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6조).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기간 확대(이재판의원안)

현행				개정안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6조) ○ 유형별 감면율 <table><tr><th rowspan="3">구분</th><th colspan="3">기본 감면</th><th rowspan="3">추가 감면</th></tr><tr><th rowspan="2">수도권 과밀억제권역</th><th colspan="2">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th></tr><tr><th>수도권</th><th>수도권 밖 *</th></tr><tr><td>창업 중소기업</td><td>-</td><td>25%</td><td>50%</td><td rowspan="5">상시 근로자 증가율 × 100%</td></tr><tr><td>청년·생계형** 벤처기업</td><td>50%</td><td>75%</td><td>100%</td></tr><tr><td>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td><td colspan="3">50%</td></tr><tr><td>창업보육 센터사업자</td><td colspan="3">50%</td></tr></table> *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포함 ** 생계형 창업지원 대상매출액 기준: 연 8,000만원 이하 ○ 감면기간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수도권 과밀억제권역</th><th colspan="2">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th></tr><tr><th>수도권</th><th>수도권 밖*</th></tr><tr><td>창업 중소기업</td><td rowspan="5">5년</td><td colspan="2" rowspan="5"></td></tr><tr><td>청년·생계형 벤처기업</td></tr><tr><td>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td></tr><tr><td>창업보육 센터사업자</td></tr></table> *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포함 ○ 감면 개시 기한: 사업 개시일, 벤처기업 확인일 등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				구분	기본 감면			추가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수도권	수도권 밖 *	창업 중소기업	-	25%	50%	상시 근로자 증가율 × 100%	청년·생계형** 벤처기업	50%	75%	100%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50%			창업보육 센터사업자	50%			구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수도권	수도권 밖*	창업 중소기업	5년			청년·생계형 벤처기업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창업보육 센터사업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소재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기간 확대 ○ 유형별 감면율: (현행과 같음) ○ 감면기간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수도권 과밀억제권역</th><th colspan="2">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th></tr><tr><th>수도권*</th><th>수도권 밖</th></tr><tr><td>창업 중소기업</td><td colspan="3">(현행과 같음)</td></tr><tr><td>청년·생계형 벤처기업</td><td>(현행과 같음)</td><td>7년</td><td>10년</td></tr><tr><td>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td><td colspan="3" rowspan="2">(현행과 같음)</td></tr><tr><td>창업보육 센터사업자</td></tr></table> *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포함 ○ 감면 개시 기한: 사업 개시일, 벤처기업 확인일 등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				구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수도권*	수도권 밖	창업 중소기업	(현행과 같음)			청년·생계형 벤처기업	(현행과 같음)	7년	10년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현행과 같음)			창업보육 센터사업자
구분	기본 감면				추가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수도권	수도권 밖 *																																																															
창업 중소기업	-	25%	50%	상시 근로자 증가율 × 100%																																																														
청년·생계형** 벤처기업	50%	75%	100%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50%																																																																	
창업보육 센터사업자	50%																																																																	
구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수도권	수도권 밖*																																																															
창업 중소기업	5년																																																																	
청년·생계형 벤처기업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창업보육 센터사업자																																																																		
구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수도권*	수도권 밖																																																																
창업 중소기업	(현행과 같음)																																																																	
청년·생계형 벤처기업	(현행과 같음)	7년	10년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현행과 같음)																																																																	
창업보육 센터사업자																																																																		

현 행	개정안
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개시 ○ 감면한도: 연간 5억원 ○ 적용기한: 2027. 12. 31.	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개시 (단, 수도권 외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은 10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수도권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은 7년으로 확대) ○ 감면한도: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현행과 같음) ○ 시행일: 2026. 1. 1.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부터 적용

* 이재판의원안 2025. 8. 1. 발의(의안번호 11915)

□ 개정안은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세 감면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수도권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감면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이에 더하여 현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의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기간이 개시되는데,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수도권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7년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 개정안은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됨.

첫째, 세액감면 기간 확대를 통해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하여 자금이 부족한 창업 초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국가의 경제발전과 미래 성장을 고려할 때 창업을 권장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매년 창업기업이 증가하여 2022년 기준 전체 중소기업 중 창업기업의 비중이 60.1%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창업 5년 이내 폐업률이 65.3%에 달하고 있는 상황임.

[창업기업 관련 현황(2020년~2022년)]

구분	기업 수(개)			종사자 수(명)			매출액(조원)		
	'20년	'21년	'22년	'20년	'21년	'22년	'20년	'21년	'22년
중소기업	7,286,082	7,713,895	8,042,726	17,791,939	18,422,614	18,956,294	2,674.6	3,017.1	3,309.0
창업기업 (비중)	4,299,673 (59.0%)	4,549,158 (59.0%)	4,829,665 (60.1%)	7,171,330 (40.3%)	7,321,542 (39.6%)	8,514,549 (44.9%)	1,004.2 (37.5%)	1,108.8 (36.8%)	1,186.1 (35.8%)

주: 창업기업이란 전국 17개 시·도 중소기업 중 소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체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을 의미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기준 창업기업실태조사('24년 조사), 2024. 12.

[2023년 기준 신생기업 생존율]

(단위: %)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4.9	53.6	46.9	40.9	34.7

자료: 통계청, 2023년 기업생멸행정통계, 2024. 12.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발표한 '2022년 기준 창업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창업 시 필요한 소요자금은 평균 2.03억원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자금확보(50.3%)'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46.0%)'

이나 ‘창업 지식·능력·경험 부족(34.7%)’ 등 보다 창업 의사결정에 있어 더 큰 장애요인으로 선정되었음.

둘째,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 본 제도의 효과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2024년 조세특례 심층평가(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따르면, 본 제도를 통해 사후적으로 고용이 증대되는 효과가 존재하고 창업기업의 투자 제고에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투자제고 효과 및 개인사업자의 창업 초기 생존위기 극복과 경영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음.

셋째, 창업기업 지원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청년층의 사회진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022년 말 기준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3.3만 개사는 전년 대비 8.1%(5.6만명) 늘어난 74.6만 명을 고용하여, 같은 기간 전체기업의 고용규모가 2.4%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높은 증가율을 보였음.

그리고 같은 기간 전체기업의 청년 고용이 1.2% 감소한 것과 달리,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의 청년 고용은 3.6% 성장하였음.¹⁾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세액감면의 특성상 소득이 큰 기업일수록 감면혜택이 증가하여 과세형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1)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고용증가율, 전체기업 대비 높아’, 2023. 3.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는 일부 매출액 상한 등이 존재할 뿐
과세연도 수입금액 8천만원 이하의 생계형 창업기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기업에게 매출액과 무관하게 유형별로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
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둘째, 현행 제도 하에서도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한하여 세액감면 기간을 확대하려는 것인데, 현행 제도 하에서 수
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수도권 내에서 창업할 경우 5년간 75%, 수도권 밖 또는 수도권 인
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할 경우 5년간 100%의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등 다른 창업중소기업 대비 가장 큰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밖에서 창업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년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전액 감면하게
되는데, 현행법상 청년창업중소기업이 100%의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최저한세 적용까지 면제하고 있다는 점²⁾에서

2)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① 내국법인(제72조제1항을 적용
받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세액, 제100조의
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가산세 및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추정세액은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2호
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
라 한다)에 100분의 17[과세표준이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2, 과세표준이
100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

감면기간을 확대하는 것은 과도한 지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2024년 조세특례 심층평가(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다른 감면유형에 비해 감면율이 높은 것을 고려하여 시기별 점감구조를 도입하여 전체적인 조세지출을 줄이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음.

셋째, 개정안은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감면기간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수도권에서 창업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7년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 제도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8,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9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법인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4.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제3항, 제12조의2, 제21조,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4항, 제63조, 제64조, 제68조, 제96조, 제96조의2, 제99조의9, 제102조,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121조의17, 제121조의20부터 제121조의22까지, 제121조의33에 따른 법인세의 면제 및 감면.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6조제1항 또는 제6항, 제12조의2, 제99조의9,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121조의17, 제121조의20부터 제121조의22까지, 제121조의33에 따라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의 경우

나. 제6조제7항에 따라 추가로 감면받는 부분의 경우

② 거주자의 사업소득(제16조를 적용받는 경우에만 해당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가산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사업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소득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100분의 45(산출세액이 3천만원 이하인 부분은 100분의 35)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소득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4.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제3항, 제12조의2, 제21조,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 제63조, 제64조, 제96조, 제96조의2, 제99조의9, 제102조,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121조의17, 제121조의20부터 제121조의22까지, 제121조의33에 따른 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6조제1항 또는 제6항, 제12조의2, 제99조의9,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121조의17, 제121조의20부터 제121조의22까지, 제121조의33에 따라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의 경우

나. 제6조제7항에 따라 추가로 감면받는 부분의 경우

2024년 세법개정 당시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수도권에서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감면율을 25%p 축소하였지만, 수도권 인구감소지역³⁾ 내 창업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감면율을 축소하지 않고 수도권 밖 창업중소기업과 동일한 감면율을 적용하도록 제도를 개편한 바 있음.

문 의 처
02)6788-5154

3) 경기도 가평군·연천군, 인천광역시 강화군·옹진군